

NEWSLETTER 605

Dec 29, 202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및 농림축산물의 환급 방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1. 개정 사유

- 별표1과 별표2 물품의 품목번호(HSK)를 '22.1.1.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와 연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1(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품목번호 연계
: 1:1 연계 10개 품목, 1:多 연계 11개 품목 (참고)
☞ 86개 품목 ⇒ 114개 품목(14개 삭제, 42개 신설)

▶ 삭제

2841.90-9000, 7104.90-1090, 8409.99-2000, 8529.90-9610, 8537.10-9000, 8539.50-0000, 8542.31-4090, 8542.32-4090, 8542.33-4090, 8542.39-4090, 8542.90-4090, 9013.80-1130, 9013.80-1930, 9013.80-1990

▶ 신설

0403.20-1000, 0403.20-2000, 0403.20-9000, 2841.90-9010, 2841.90-9020, 2841.90-9030, 2841.90-9040, 2841.90-9090, 2404.12-9000, 2404.92-0000, 2404.99-0000, 3006.93-0000, 3824.89-0000, 3824.92-0000, 3824.99-9040, 3824.99-9051, 3824.99-9052, 3920.99-9020, 7104.99-9010, 8409.99-7000, 8507.60-2000, 8507.60-3000, 8529.90-6021, 8537.10-4000, 8537.10-5090, 8529.90-2000, 8538.90-5000, 8539.52-0000, 8542.31-4000, 8542.32-4000, 8542.33-4000, 8542.39-4000, 8542.90-0000, 8541.51-1000, 8541.51-3000, 8541.51-4000, 8524.11-3000, 8524.11-1000, 8524.11-2000, 8524.11-4000, 8524.11-5000, 8524.11-9000

- 별표2(서울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품목번호 연계
: 1:1 연계 7개 품목, 1:多 연계 5개 품목 (참고)
☞ 107개 품목 ⇒ 123개 품목(11개 삭제, 27개 신설)

<p>▶ 삭제</p> <p>2921.43-9099, 8409.99-2000, 8529.90-9400, 8542.31-4090, 8542.32-4090, 8542.33-4090, 8542.39-4090, 8542.90-4090, 8543.90-9090, 9013.80-1930, 9013.80-1990</p> <p>▶ 신설</p> <p>2921.43-9090, 2404.12-9000, 2404.92-0000, 2404.99-0000, 3006.93-0000, 3824.89-0000, 3824.92-0000, 3824.99-9040, 3824.99-9051, 3824.99-9052, 8409.99-7000, 8529.90-5000, 8541.51-3000, 8541.51-4000, 8542.31-4000, 8542.32-4000, 8542.33-4000, 8542.39-4000, 8542.90-0000, 8543.90-9000, 8708.22-0000, 8524.11-3000, 8524.11-1000, 8524.11-2000, 8524.11-4000, 8524.11-5000, 8524.11-9000</p>

II.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 개정 사유

- '22.1.1.부터 시행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별표의 품목번호를 일치·연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의 품목번호를 2022.1.1. 시행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의 품목번호에 맞추어 수정
: 1:1 연계 2개 품목, 1:多 연계 1개 품목, 多:1 연계 1개 품목 (참고)
☞ 273개 품목 ⇒ 275개 품목(5개 삭제, 6개 신설, 1개 추가)

<p>▶ 삭제</p> <p>0207.12-1000, 0207.12-9000, 0703.10-1000, 0802.90-1010, 0802.90-1020</p> <p>▶ 신설</p> <p>0207.12-0000, 0703.10-1010, 0703.10-1090, 0802.91-0000, 0802.92-0000, 1211.20-1120</p> <p>▶ 추가</p> <p>1211.20-9900</p>

III. 시행일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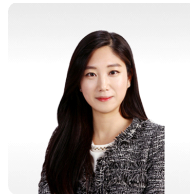
- [붙임1] 1. 입안계획서_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 [붙임2] 2. 신규조문대비표_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 [붙임3] 3. 개정전문_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 [붙임4] 1. 입안계획서_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붙임5] 2. 신규조문대비표_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붙임6] 3. 개정전문_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Contact



강민주 관세사

T 02-6011-3073
E mjkgang@esein.co.kr



이하나 관세사

T 02-6011-3035
E hnlee@esein.co.kr



전소연 관세사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